



태스크포스 추가 지침

정책이행 위원회는 한국의 제주에서 열리는 제 3 차 정책이행 위원회 회의를 위한 활동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태스크포스가 이바지한 노력에 감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태스크포스는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 활동계획의 이행 관리: 현재로서 모든 태스크포스를 위한 우선적인 일은 이미 승인된 활동계획 프로젝트와 그를 위한 활동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 더욱 세부적인 프로젝트 계획 작성
 - 관리 및 참여 기관 확인
 - 자원 (금융, 또는 그 유사한 종류) 확인
 - 감독과 보고에 관한 절차의 개발
- 프로젝트와 활동이 가능한 참여국에서 파트너쉽과 활동계획을 추진: 태스크포스는 특별히 활동계획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태스크포스의 활동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접촉을 통하여 파트너쉽을 추진하도록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핵심적인 접촉 대상으로서는 참여국 내의 영리 기업, 자금과 자원을 조종할 수 있는 기관, 국제 협회 및 기타 공공 관련 당국과 비정부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활동계획 내에서의 심의 조정과 프로젝트 및 활동 사항의 보고: 태스크포스는 활동계획 프로젝트와 활동 사항을 심의하고 보고함에 있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제 3 차 정책이행 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후, 6 개월 안에 프로젝트의 상황과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정책이행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표준 보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추가 내용으로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각 프로젝트에서, 태스크포스는 활동 일자, 이전의 보고 내용과 다른 사항, 다음 단계의 예상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태스크포스는 해당 분야에서 활동계획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미 조치를 취했거나 예상되는 어떠한 추가 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 태스크포스의 주제, 또는 부문 내에서의 향후 파트너쉽 협력에 관한 전략적 기획 수립: 이것은 다음 단계 프로젝트의 확인과 추진 방안의 개발에 관련된 활동계획이나 추가 사업이라고 확인된 활동에 대해 세부적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 참여국에서 발의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태스크포스는 발의된 새로운 프로젝트의 심사와 개발에 대해 추진력을 가진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이행 위원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기능을 한다. 새로운 프로젝트와 활동을 승인하는 절차는 “파트너쉽의 추가 신규 프로젝트와 활동을 위한 절차”라는 제목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는 파트너쉽 헌장, 실무 계획, 공동 성명서 (2006년 1월), 태스크포스 지침 (2006년 4월) 및 추가 신규 프로젝트 발의 절차 (2007년 4월) 등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